# 어린이 식품안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 ]**

국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식품을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 1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4
1.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4
1.1.1. 보호구역의 지정 ..... 4
1.1.2. 보호구역 안 조리·판매업소 관리 ..... 5
2.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 ..... 8
2.1. 식품의 표시 방법 ..... 8
2.1.1. 식품의 표시기준 ..... 8
2.1.2. 원산지 표시의무 ..... 8
2.1.3. 원산지 표시방법 ..... 12
2.2.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인증 ..... 15
2.2.1. 기호식품의 표시방법 ..... 15
2.2.2.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 18
2.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19
2.3.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방법 ..... 19
3. 급식안전 관리 ..... 22
3.1. 학교급식의 운영·관리 ..... 22
3.1.1. 학교급식의 운영 ..... 22
3.1.2. 급식·위생관리 ..... 24
3.1.3. 식중독 사고 대처방안 등 ..... 26
3.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27
3.2.1. 지원센터의 설치 등 ..... 27
3.2.2. 지원센터의 평가 ..... 28

#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1.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1.1.1. 보호구역의 지정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 **어린이란?**
>
> "어린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제3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와 종류
-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 통학하는 학생 수
-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3호가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의 정문·후문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학생들이 많이 찾는 업소가 분포된 지역
- 그 밖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은 다음과 같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 구분 | 표지판의 종류 |
| --- | --- |
| 가로형 |  |
| 세로형 |  |
| 타원형 |  |

### 1.1.2. 보호구역 안 조리·판매업소 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구분 | 내용 |
| --- | --- |
| 가공식품 |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 및 캔디류<br>▪ 빵류<br>▪ 초콜릿류<br>▪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br>▪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br>▪ 면류(용기면만 해당)<br>▪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br>▪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br>▪ 빙과류 중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
| 조리식품 | ▪ 제과·제빵류<br>▪ 아이스크림류<br>▪ 햄버거, 피자<br>▪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및 핫도그 |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관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로 관리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1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기타 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 그 밖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및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판매하는 업소

##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2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 본문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냉장·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 화장실의 개수(改修)·보수 비용
-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 그 밖에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

※ 다만,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 단서).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 우수판매업소의 표시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다음의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1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3).



## 2.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

### 2.1. 식품의 표시 방법

#### 2.1.1. 식품의 표시기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 등의 표시기준**

▪ 식품 등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구분 | 필수 기재사항 |
|---|---|
|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br>▪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br>▪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br>▪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br>▪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 재질<br>▪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br>▪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br>▪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 건강기능식품 | ▪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br>▪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br>▪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br>▪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br>▪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br>▪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br>▪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br>▪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 표시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해당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 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1.2. 원산지 표시의무

**원산지 표시의무**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생산·가공·판매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의무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농수산물
-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의 원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 우수관리인증표시 또는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조리·판매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의무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 포함)하는 경우
- 위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정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1조제8호)

| 구분 | 내용 |
| --- | --- |
| 휴게음식점영업 |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br>▪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 집단급식소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 원산지 표시대상

###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가공품의 원료를 포함)은 다음의 구분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

| 구분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
| --- | --- |
| ▪ 국산 농산물<br>▪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br>▪ 농산물 가공품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 |
| ▪ 국산 수산물<br>▪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br>▪ 수산물 가공품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2 |

▪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의 원료에 대한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3조).

| 대상 | 내용 |
| --- | --- |
| 농수산물 가공품원료의<br>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 1.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br>2.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br>3. 1. 및 2.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br>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
| 농수산물 가공품원료의<br>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표시대상 |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상위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함<br>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수입하거나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통관 또는 반입 당시의 원산지 표시<br>2.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한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 한 가지만 표시<br>3.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이하 “2차 복합원재료”라 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2차 복합원재료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명칭의 괄호 안에 2차 복합원재료 내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단일원료 한 가지의 명칭과 원산지를 함께 표시<br>4. 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인 경우(3.에 따른 2차 복합원재료가 김치류인 경우 포함)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를 제외하고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 표시 |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의무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에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전단).

- 쇠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 돼지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 닭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 오리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 양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 염소(유산양을 포함)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 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
-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와 고춧가루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 가공품을 포함)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
-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 원산지 표시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과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후단).

### 2.1.3. 원산지 표시방법

#### 농수산물·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등

##### 원산지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및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구분 | 원산지 표시방법 |
|---|---|
| 농수산물, 수입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반입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 농수산물 가공품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통신판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 ※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구분 | 내용 |
|---|---|
| 과징금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
| 징역 또는 벌금 |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倂科)<br>▪ 위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倂科) |

-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가 자신의 위반사실을 자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진 자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때를 말함)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구분 | 내용 |
| --- | --- |
|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br>▪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
|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 |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

※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구분 | 내용 |
|---|---|
| 공표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br>√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사람<br>√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br>※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음 |
| 공표사항 | √ 처분내용<br>√ 해당 영업소의 명칭<br>√ 농수산물의 명칭<br>√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br>√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공표방법 |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br>√ 해양수산부 홈페이지<br>√ 관세청 홈페이지<b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br>√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br>√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홈페이지<br>√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br>√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를 제공하는 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

## 2.2.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인증

### 2.2.1. 기호식품의 표시방법

####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방법

##### 영양성분 표시

▪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그 영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함. 이하 같음)는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다음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제3조 및 제4조).

| 구분 | 내용 |
| --- | --- |
| 표시대상<br>식품접객영업자 | 다음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영양성분 표시 등의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br>▪ 제과·제빵류<br>▪ 아이스크림류<br>▪ 햄버거·피자<br>▪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
| 알레르기<br>유발식품 |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하는 경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제1호 가목)<br>▪ 알류(가금류만 해당)<br>▪ 우유, 메밀, 땅콩, 호두, 대두, 밀 및 잣<br>▪ 복숭아·토마토<br>▪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에만 해당함)<br>▪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br>▪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및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 알레르기<br>유발식품<br>표시기준 | 사용 또는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 |
| 표시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br>▪ 매장에서 해당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책자 및 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하여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비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br>▪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br>▪ 전화를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및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 |

###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의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및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또는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해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및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제1항).

▪ 영양성분의 색상모양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제2항·제3항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 ※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의2제1항).

>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2.2.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 품질인증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제3조제1항).

- 안전에 관한 기준
- 영양에 관한 기준
-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품질인증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에 따른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포함)에 대해 품질인증과 관련된 행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4항).

####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용기·포장 등에 다음과 같은 도형 또는 문자로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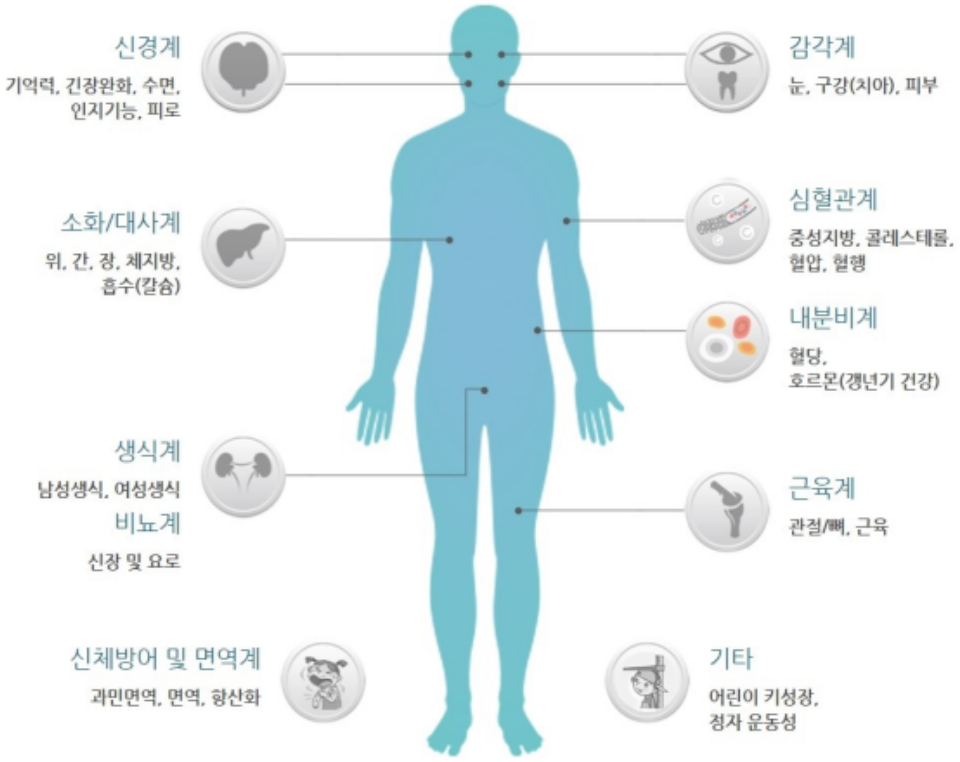

## 2.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2.3.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방법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방법

#####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 다음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제2호).




<출처: 식품안전정보 포털-식품·안전정보-건강기능식품정보-기능별 정보>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방법

-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4조 참조).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 제품명
  - 업소명 및 소재지
  -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 내용량
  - 영양정보
  - 기능정보
  -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 원료명 및 함량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만 해당)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건강기능식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급식안전 관리

## 3.1. 학교급식의 운영·관리

### 3.1.1. 학교급식의 운영

#### 학교급식의 운영

##### 학교급식 대상

▪ 학교급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2조, 제60조의3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유치원(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 50명 미만인 유치원 제외)
- 초등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 대안학교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및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해야 함
- 학교급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 학교 밖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함

√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해야 함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학교의 이전 또는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 안전한 식재료 사용

-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제10조제1항).

> ※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양관리 등

### 영양관리·지도

-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제11조제1항).
- 학교급식은 영양관리기준에 따라 식단작성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전통 식문화(食文化)의 계승·발전을 고려할 것
  -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
  -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양교사 등의 배치

-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 본문).
-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조리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식품위생법」 제51조제2항).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함]

-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 3.1.2. 급식·위생관리

####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다음과 같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제12조제1항·제2항,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4).

| 구분 | 내용 |
|---|---|
| 시설관리 | ▪ 급식시설·설비, 기구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br>▪ 냉장·냉동고의 온도, 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수 온도 또는 식기소독보관고의 온도를 기록·관리<br>▪ 급식용수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 또는 살균하여 사용 |
| 개인위생 | ▪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다만,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음)<br>▪ 손을 잘 씻어 손에 따른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다만, 손 소독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음) |
| 식재료관리 | ▪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 여부를 고려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함<br>▪ 식재료 검수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품질 및 신선도와 수량, 위생상태 등을 확인하여 기록 |

| | |
|---|---|
| 작업위생 | ▪ 칼과 도마, 고무장갑 등 조리기구 및 용기는 원료나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수시로 세척·소독<br>▪ 식품 취급 등의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 이상의 높이에서 실시하여 식품의 오염을 방지<br>▪ 조리가 완료된 식품과 세척·소독된 배식기구·용기등은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는 기구·용기 또는 원재료 등과 접촉에 따라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br>▪ 해동은 냉장해동(10℃ 이하), 전자레인지 해동 또는 흐르는 물(21℃ 이하)에서 실시<br>▪ 해동된 식품은 즉시 사용<br>▪ 날로 먹는 채소류, 과일류는 충분히 세척·소독<br>▪ 가열조리 식품은 중심부가 75℃(패류는 85℃) 이상에서 1분 이상으로 가열되고 있는지 온도계로 확인하고, 그 온도를 기록·유지<br>▪ 조리가 완료된 식품은 온도와 시간관리를 통해 미생물 증식이나 독소 생성을 억제 |
| 배식 및 검식 | ▪ 조리된 음식은 안전한 급식을 위해 운반 및 배식기구 등을 청결히 관리하며, 배식 중에 운반 및 배식기구 등으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br>▪ 급식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배식하는 경우 배식용 운반기구 및 운송차량 등을 청결히 관리하여 배식시까지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함<br>▪ 조리된 식품에 대해 배식하기 직전에 음식의 맛, 온도, 조화(영양적인 균형, 재료의 균형), 이물(異物), 불쾌한 냄새 및 조리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식을 실시<br>▪ 급식시설에서 조리한 식품은 온도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배식을 마쳐야 함<br>▪ 조리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함 |
| 세척 및 소독 등 | ▪ 식기구는 세척·소독 후 배식 전까지 위생적으로 보관·관리<b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급식시설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 |

| | |
|---|---|
| 안전관리 | ▪ 관계규정에 따른 정기안전검사[가스·소방·전기안전, 보일러·압력용기·덤웨이터(dumbwaiter)검사 등]를 실시<br>▪ 조리기계·기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작동방법을 게시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 그 표시를 부착하고 철저히 관리<br>▪ 조리장 바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미끄럽지 않게 관리 |
| 기타 |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의 위생·안전관련 기준에 따름 |

### 3.1.3. 식중독 사고 대처방안 등

#### 식중독 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

##### 초기 대처방법

▪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급식을 중단하고 즉시 시청·군청·구청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보고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 전단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217-218면 참조).

- 발생 신고는 가까운 관할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로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옆으로 눕힌 상태로 보살펴야 함
- 의사의 지시를 따르며,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않아야 함

▪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는 급식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설사 환자 파악, 현장조사, 가검물 및 보존식 수거 등 보건소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2023년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218면 참조).

- 보존식과 현장을 임의로 폐기, 훼손한 경우 과태료 부과
- 보건소 역학조사 이후 시설과 기구에 대한 살균 및 소독 실시

#### 식중독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 식중독 발생에 따른 책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3호).

> ※ 식중독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1항제4호 및 제88조제2항제1호).

▪ 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제22조제1호).

### 3.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3.2.1. 지원센터의 설치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본문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 청소년시설의 급식소
-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
-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인 시설의 급식소

※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단서).

▪ 다음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함)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의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

※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를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해 기간을 정해 필요한 시정명령을 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제2호).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8호).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13조).

- 법인
-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
-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3.2.2. 지원센터의 평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감독·지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감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4제1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도·점검 및 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4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급식소에 대한 지원
  - √ 식재료 관리, 식단구성 및 조리·배식 등 급식관리
  - √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안전 관리
  - √ 위생, 영양 및 안전에 대한 지도·관리 및 교육
- 급식소의 등록 관리

※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위생 및 영양관리 현장 지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급식소의 만족도
- 예산집행의 적정성
-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 결과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